

第287回國會  
(臨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10年2月25日(木) 午後 2時

## 議事日程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敎育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 

### 附議된案件

o	의원신상발언	4
o	의사진행의 건	5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7
o	의원신상발언	16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영진·서갑원·조영택·송영길·양승조·박은수·이춘석·박기춘·최영희·박선숙·김성곤·최철국·우윤근·박병석·최규성·변재일·박영선·김동철·김영록·강운태·이낙연·유선호 의원 발의)	17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19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김무성·유승민·이성현·한선교·손범규·임동규·배영식·김소남·임두성·강성천·원희목·김영우·이윤성·박대해·손숙미·유정복·이정현·이학재·허원제·진영 의원 발의)	19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0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0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0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0
14.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0

15. 職業教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8.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김용태·권영진·박보환·박영아·서상기·신성범·이철우·정두언·조전혁 의원 발의) .....	20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 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2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 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 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2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 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 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 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 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 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3
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25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 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 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5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 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 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25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25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6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26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26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26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26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7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김춘진 · 강명순 · 최재성 · 원유철 · 이정선 · 정미경 · 조전혁 · 진성호 · 박준선 · 권성동 · 김충조 · 정의화 · 이경재 · 박기춘 · 전혜숙 · 홍사덕 · 김유정 · 박상천 · 최인기 · 김영록 · 주승용 · 허천 · 정장선 · 박선숙 · 김성순 · 백원우 · 안규백 · 서종표 · 김상희 · 김동철 · 이성남 · 조영택 · 강봉균 · 이시종 · 최규성 · 조정식 · 오제세 · 최철국 · 김재균 · 변재일 · 김영진 · 이미경 · 이강래 · 우윤근 · 우제창 · 백재현 · 박주선 · 박은수 · 김효석 · 김소남 · 김학용 · 이낙연 · 안민석 · 손숙미 · 이애주 · 유재중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걸 · 신상진 · 최구식 · 윤석용 · 안효대 · 유기준 · 신학용 · 김금래 의원 발의)	27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종혁 · 조승수 · 이진복 · 정수성 · 홍정욱 · 김충환 · 김성순 · 신상진 · 김기현 · 김태원 · 이성현 · 유성엽 · 유기준 · 김부겸 · 김을동 · 김영진 의원 발의)	28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이정현 · 임영호 · 박은수 · 유정복 · 박민식 · 김을동 · 최구식 · 구상찬 · 김옥이 · 이한성 · 이해봉 · 현경병 · 김태원 · 한선교 · 김성태 · 황우여 · 조원진 · 이범래 · 김성수 · 안형환 · 김선동 · 이경재 · 안효대 · 이계진 · 김세연 ·김장수 · 백재현 · 이종구 · 송훈석 · 김소남 · 허원제 · 김영우 · 박선숙 · 최영희 · 유기준 · 정수성 · 이주영 · 김부겸 · 권영세 · 권선택 의원 발의)	29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환경노동 ·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9
o 5분자유발언	30

(14시20분 개의)

(14시23분)

○의장 김형오 의원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박종근 의원, 김성조 의원, 유승민 의원, 세 분 의원의 소개로 대구 대륜고등학교 학생 76인이 방청을 하러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을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운

찬 국무총리로부터 자료 제출을 약속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자

료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상식적으로 봐도 숨길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노

o 의원신상발언

동당 투표 서버에 대한 검증 영장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장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2주나 머뭇거리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겠습니까?

그 정황을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 의심되는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했던 컴퓨터의 IP를 추적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인근 PC방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2개의 PC로 8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적인 해킹을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219조·114조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3조2항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는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영장 집행 장소가 PC 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를 검증했는데 경찰은 민주노동당에게 어떤 연락을 했으며, 어떤 참여를 보장했습니까? PC방 주인은 123조2항에 따라 자신의 PC방에서 영장이 집행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참여를 보장받았습니까?

투표 서버의 소유자인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의 영장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까? 경찰이 말하는 적법한 법집행은 도대체 어떤 법과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경찰은 불법적인 해킹을 근거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도 당사 앞에는 경찰이 상주하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함께 막아내지 못한다면 언제 한나라당이, 언제 민주당이, 언제 자유선진당이, 미래희망연대가, 창조한국당이, 진보신당이 불법적인 사찰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검경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를 국무총리가 나서서 은폐하고 있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장께서는 국무총리의 국회 기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며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검경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안기관이 불법적 수단까지를 동원해 공당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공무원과 교사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업무와 직위를 이용한 것만 엄격히 규제하면 됩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헌법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의 불법적인 정당 사찰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오 들어가세요.

○권영길 의원 지난번 의장께서 우리 국회법에 이것을 신상발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충분히 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오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진행의 건

(14시29분)

○의장 김형오 다음은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의 정

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제하는 조항 신설과 일부 지역의 시도의회 정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원회안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수차례 연장한 끝에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위원회안이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부재자투표에 대해 이번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여야 간에 이미 합의를 끝낸 선거구제도를 정면으로 뒤집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정치관계법 개정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근간에서 흔드는 현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술하게 격돌하고 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 왔던 유일한 원칙과 관행이 바로 정치관계법 개정인 만큼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정치관계법은 정치의 기본 룰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특정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여야 간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는 의석수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합의를 했고 합의한 부분만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변경시킨 사례는 아무리 험난한 정치환경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원칙과 관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

다.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은 재외국민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와 비례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야도 이는 차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설득해 합의를 해 오라며 당장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계십니다.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여야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존중하여야 할 국회의장께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원칙과 명분을 동시에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금번 임시국회에서 즉각 상정 처리하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문제는 향후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의장님과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위원회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철회하고 위원회안을 상정 처리해 주시기를 염중하게 요청합니다.

거듭 공직선거법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의장님의 현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은 얘기 다 하고 국회의장이 입만 벌리면 그냥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다 알았으면 의원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부탁하면 오히려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정개특위법이 선상투표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상투표에 관한 규정이 특정 인사에 의해서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조금 똑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즘 약속이 중요하다, 신의가 중요하다면서 왜 이 약속은 안 지킵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각 지구당별로 따지면 불과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60년 동안 세금 꼬박꼬박 낸 사람들에게…… 왜 평소에 약자 보호, 소수자 권익 보호를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조금 편협한 생각 마시고 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김상희 의원의 다른 얘기에는 다 동감이지만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상희 의원이 과거처럼 그런 용어 안 쓰고 오늘 들어 보니까 상당히 용어 선택을 잘합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자기 인격을 훼손시키는 용어는 우리 국회의원 누구든지 이 단상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스스로 하도록 하십시오.

##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14시36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영우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2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 다시 말씀드려 PRT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부대를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PRT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부대의 파견 규모는 350명 이내이고 파견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이며, 둘째 국군부대의 임무는 대한민국 PRT 주둔지와 PRT 활동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야 합의 조정이 잘 된 것인지 잘 안 된 것인지 모두 8명이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단하에서 — 몇 분이에요? 5분 아니에요?)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저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인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제주인들은 항상 가슴 속에 무겁고도 가혹한 명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4·3 사건 때문에 1948부터 1954년까지 7년간 무려 3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을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로 극복한 우리의 경험은 전쟁과 양민학살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떤 형태의 국군 파병도 반대합니다.

저희가 집권여당일 때인 17대 국회에서도 이라크 파병이나 북한 파병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당론 결정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 열린우리당 때에 당론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자고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익을 전제로 결정됩니다. 오늘의 안전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은 실익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더욱 반대합니다.

첫째로, 아프간 파병은 이슬람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결정이므로 반대합니다.

지금은 경계도 없고 적도 안 보이는 테러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국민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재파병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격론과 의리론을 명분으로 삼아 파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얻게 될 국격 향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라리 국격 향상을 원한다면 1000억에 가까운 파병 비용을 그대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로, 아프간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프간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즉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몽골제국, 대영제국은 물론 소련도 아프간 침공은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퇴했습니다. 미국은 2001년 10월 개전 이래 8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동일시하는 미국과 나토의 전략은 잘못됐습니다. 내전과 국제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릴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와 지방 토호의 배만 불리는 전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프간 주민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프간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정의롭지 못한 학살전쟁이라는 점과 테러를 전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불명예 퇴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1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캐나다 등 주요 파병국들도 2011년까지 철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넷째로, 아프간 재파병은 상황 불변인데 철군했다가 재파병하는 전례도 없고 국민적 합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가 2007년 한국인 선교봉사단 납치 사건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주둔군을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프간 철군이 국민적 합의이며 우리 국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 이후 아프간 전쟁의 본질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재파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입니다.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통행 속도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병 동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여 주시고,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파병 동의안에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저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과 관련 찬성토론 차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아프간에 파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정부가 원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모두 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한 나라, 반세기가 넘는 분단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나라, 성공적인 민군작전을 통해서 쌓아 온 노하우를 가진 나라, 오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파병되는 우리의 재건팀 PRT는 단순히 다리 놓고 건물 몇 채 짓고 도로 건설 몇 km 하려 아프간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간 주정부의 행정능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를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을 개발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도와주고 치안을 위해서 경찰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폐되어 있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지방재건을 돋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 가는 민간 전문인력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를 서 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동티모르에서는 다국적군의 왕으로, 이라크에서는 진정한 친구로, 레바논에서는 한 가족 친형제로, 그리고 특히 아프간에서는 ‘꾸리 넘버원(Korea No.1)’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민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이 민간인 전문가로 편성된 PRT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팀과 혼합 편성해서 파병하는 것을 마치 전투하려 가는, 그리고 파병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강조하고 반대하는 것은 지방재건팀의 기본임무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민간 재건전문팀의 안전을 우리가 맡는 건 당연

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아프간 파병은 국제사회가, 그리고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정부가 대한민국에 직접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제사회와 아프간은 폐허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든 우리의 경험을 아프간의 재건과 복구 지원을 위해서 써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하려는 둘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6·25전쟁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유엔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파병으로 대한민국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되살아난 국가가 국제사회가 요청을 하고 아프간이 요청을 하는 곳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지금 세계는 독불장군이 없고 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진출해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동포를 볼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와 함께 땀과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주장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엔이 결의를 했고, 그 나라가 요청을 했고, 국제사회가 반기는 파병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명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진 그러한 은혜를 갚는 것이 그 명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명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아프간을 돋기 위한 도덕적·양심적·

의무적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판단으로 이번 아프간 파병 동의안에 반드시 찬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우리 민주당은 파병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말리아 파병, 아이티 PKO 파병과 같이 목적과 명분이 뚜렷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국격 신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파병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작년 12월 11일 정부는 350명의 전투병을 2년 6개월 동안 파병한다는 유례가 없고 전례가 없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월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아프간 동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파병 동의안이 첫째 졸속 추진, 둘째 모호해지는 아프간 정세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명분과 목적이 상반됨에 따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3일 갑작스런 외교부의 아프간 파병 발표 이후 정부는 한 달여인 12월 11일 국회에 아프간 파병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프간 실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PRT 운용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동의안 제출 이후 909억 원 예산이 단 두 달 만에, 두 달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이번 아프간 파병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말에 ‘욕속즉부달(慾速卽不達)’이란 말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고자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프간 파병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아프간

파병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정책을 뒤집는 MB 정부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마루타 실험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아프간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COS 아프간 리서치팀은 2008년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을 80% 장악하고 있으며 부패한 아프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아프간 주민은 대부분이 탈레반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미 의회에서 현재 아프간 미군 사령관인 맥크리스털 장군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레반을 아프간 재건으로 인정해야 하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병은 반정부 세력이라 불리는 탈레반으로부터 우리 민간지원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리서치 결과 미군 사령관 발언 사례는 탈레반은 더 이상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닌 협상과 재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이 주민이 탈레반이고 탈레반은 주민이라고 하고 있는 피아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간 재건팀으로 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파병하고 누구를 위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까?

피아 간 구분이 없는 현 아프간과 2011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NATO군이 철수하는 출구전략 상황에서 우리 군을 파병한다는 의미는 독사가 득실대는 곳에 맨발로 가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PRT를 주도해 온 ISAF는 현재 탈레반 토벌작전에 직접적인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작전 중 얼마 전에 오픽으로 수십 명의 아프간 주민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간팀으로 위장한 CIA PRT 사건과 중화기 무기로 무장한 ISAF 군인들 그리고 부정부패한 정부를 돋는 것에 대해 아프간 주민들은 ISAF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으로 아프간 주민들은 ISAF를 재건팀이 아닌 침략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ISAF 통제 안에 있는 우리 PRT는 본래의 목표와 취지에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아프간 파병

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고 목적과 명분이 상반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우리의 아프간 파견이 민간 PRT라고 기만하고 있지만 우리 PRT도 아프간에 파견되면 군 조직인 ISAF 작전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군 조직의 일환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도 미국도 다국적군도 전부 다가 군 중심의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민간 중심이라고 하는지 또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유사시에는 우리 군도 정부가 주장한 비 전투와 지방 재건을 넘어서 탈레반 토벌작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아프간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졸속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 한나라당 김동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프간 파병팀의 군인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기지 보호와 PRT 민간요원의 보호이지 절대 전투가 아닙니다. 즉 절대 탈레반 소탕 전투가 임무가 아닙니다.

탈레반과의 전투는 현재 미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마치 전투병 파병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는 민간요원들을 미군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타 군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우리 군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번 군인들의 파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 파병은 군 중심이 아니고 명백하게 아프간 재건작업을 하는 민간인 중심입니다. 이번 아프간 파병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민간인 100명과 경찰 40명 그리고 군인 350명으로서 군인 대 민간인 비율이 3 대 1 수준입니다. 이것은 8 대 1 그리고 9 대 1의 비율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다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아프간 사태를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어떤 국가가 우리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다른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파병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병안이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파병 준비기간이 수개월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 지뢰 방호 차량 구입, 헬기 성능 개량 그리고 파병 인원의 선발 및 교육 등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제 사회가 적어도 7월까지는 한국의 아프간 PRT 파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아프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파병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PRT가 파견되는 파르완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입니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니 경우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도 주어진 임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해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위험하면서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는 아이티에 우리가 왜 갔습니까? 위험한데 타국에서는 왜 6·25전쟁 때 자국의 병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에 보냈습니까?

대한민국은 위험하다고 해서 할 일을 포기해 버리는, 그리고 타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혼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비겁한 나라가 아닙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왜 우리의 병력을 파견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요청했던 것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한국의 경험이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민간인 재건 중심의 PRT 파견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PRT의 통제를 유엔이 아닌 ISAF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PRT의 임무 및 이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민간 PRT의 이동, 그리고 기지 방호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사항 때문에 ISAF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협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이 ISAF 군의 전투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의 참화 속에 지금 아프간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손길을 애탏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6 · 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한국의 모습이 미래의 아프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프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번 파견 동의안이 2월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로서만이 아니라 60년 전에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우방들이 구해 줌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도 아프간 파병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전투병력이 아니라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강화하고, 보건 · 의

료나 농촌개발 또는 직업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행위를 근절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함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입니다.

동의안은 파견기간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군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바로 철군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재파병을 하면서 우리는 그 기간을 2년 6개월로 그냥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파병기간은 기본적으로 파병 목적과 임무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체코 · 헝가리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파견 기간 또는 파견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월남 파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년 또는 길어야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철군을 시작하는 시점에 파병을 하면서 그 기간을 2년 6개월로 연장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 60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이라도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동의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파병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간에 점검해서 재파병 또는 연기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병기간을 1년 또는 1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은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수정으로 동의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파견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동안에는 그 장기화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테러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

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견지역입니다. 파르완주는 미국이 2004년부터 PRT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사정 변경이 매우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전한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해야 할 우리 국회에서는 파병에 찬성은 하되 그 기간은 1년 또는 1년 6개월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議員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전사 부대원 1009명을 상대로 아프간 파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특전사 인원수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1%, 즉 10명 중 9명이 아프간 파견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서 지방재건팀 파견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6000명을 파병해서 전란의 화마에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비단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태국·콜롬비아 같은 나라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 준 바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는 한국전쟁 당시에 2000달러를 우리에게 보내 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그 어려운 나라가 우리에게 보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실속만 쟁기고 이해관계만 따졌다 면 에티오피아가, 아이티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63만 유엔군의

참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동족상잔의 폐허에서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찰스 왕세자의 차남 해리 왕자가 아프간 최전선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 아들, 매케인 상원의원의 아들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내 아들부터 먼저 아프간에 보내서 대한민국의 이상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몸으로 보여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을 전쟁하라고 사지에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프간의 재건을 돋기 위해서 재건팀을 보내는 것이고, 바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병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프간 파견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시고 오늘 퇴장하시겠다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여당으로서 동의부대, 다산부대의 파병을 관철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등극시키며 노무현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로 자랑하셨습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아프간 재건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욱이 우리 특전사 10명 중 9명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것은 자랑이고 국제사회에 다른 나라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일은 외면하는 행태가 G20를 유치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보여 줘야 될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21세기 평화통일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응원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물은 빼먹고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기억할 것이라 보십니까?

아프간 내정,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인정합니

다.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도 했습니다. 북부동맹의 주요 요충지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보안이 잘 되어 있는 파르완주, 여기에 공항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철수가 용이한 파르완주에 우리 PRT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0년을 기점으로 역사상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 최초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경제 규모 그리고 외교 역량에 걸맞은 성숙한 기여외교, 클로벌외교를 우리 초당적으로 한번 같이 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사자로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재건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간의 기본 취지입니다. 전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간도 2년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도 딱 지켰습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곽경해 씨가, 2004년 역시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산부대 윤장호 하사가,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 심성민 씨가 점령과 파병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이 피랍되고 사망할 때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는 정녕 이들을 잊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형제의 일인듯 함께 느꼈던 그 참담한 고통을 잊으셨습니까?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시작된 이후 미군은 940여 명, 미군 외 다국적군은 63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주둔 외국군 전사자 숫자는 2009년 말까지 50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8년 295명이었던 사망자 숫자가 2009년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하여 개전 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2009년 한 해 동안만 2412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를 전인 2월 23일에도 국제안보지원군이 민간인 차량 3대를 무장 세력으로 오인하여 폭격하고 3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4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8년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미래가 없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군인도 민간인도 모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석유를 얻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의 희생자입니다. 이 더러운 전쟁에 왜 대한민국이 뛰어들어야 합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격을 높이기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불의 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이고 총을 앞세워서 다른 이의 삶을 짓밟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민간 지원단이라는 것은 정부만의 주장일 뿐 아무도 지금의 재파병을 민간인력 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다국적 군일 뿐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영토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유엔 직원조차 대규모로 철수하고 NGO 단체가 테러의 표적이 되고 외국군 사망자가 대폭 늘어가는 등 갈수록 전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13억 아랍 중동 민심이 차갑게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한 국인이 세계 어디에서건 납치 살해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지 않는 한 테러와 학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라크에서 아들을 잃은 신디 시핸은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쏜 이라크 군인이 미국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누구든 조국이 침략당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쏠 권리가 있다. 진짜 살인자는 백악관과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인자가 되려고 합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필요한 것은 군인을 앞세운 이름뿐인 재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 종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반대 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짚어지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찬성토론 첫 번째로 나오신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이번 재파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파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른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83호와 1890호가 그 내용인데 문제는 이 결의안이 군대의 파병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프간의 재건을 국제 사회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결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지역 재건 팀이라는 이 부대가, 이 병력이 유엔 PKO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ISAF라고 하는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파병이 지금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로 유엔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백 번 양보해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PRT 팀이 파견되고 여기에 필요한 보호병력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PRT가 진정으로 아프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액션에이드, 옥스팜, 세이브더 칠드런 등 11개 국제 NGO들이 이 PRT 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PRT의 문제점으로 군이 주도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아프간의 독특한 문화와 외국 군대를 불신하는 관습을 고려할 때 PRT는 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 낼 수 없고, 셋째 아프간 민간 개발 과정과 민간기관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PRT로 쓰이고 있고, 넷째 PRT는 변수가 많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직이므로 일관성 있게 아프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다섯째 PRT는 아프간 전 지역 중 주요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여 아프간 개발의 불균형을 낳고 있으며, 여섯 번째 군사화된 원조는 바람직한 개발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일곱 번째 원조 및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안전과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결론에서 이 보고서는 PRT가 개발 원조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PRT의 원조 활동을 확대하거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94개의 국내 NGO들의 연합체인 ACBAR의 활동평가보고서에는 결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RT는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철군 계획을 가져야 하고, PRT에 지원되는 재원은 아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 시간에도 제가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간 국민의 절반 이상이 PRT든 어떤 파병이든 외국 군대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른바 국격에 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60여 년간 수혜만 받다가 이른바 DAC에 가입하는, 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는 그런 성과를, 또 우리 국격이, 국력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쓰여지는 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 교육과 의료 농촌 개발에는 딱 100억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700억 원의 돈이 군 막사와 PRT 시설 건축, 군 주둔 경비로 쓰여집니다.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파병이며, 어떤 국익이며,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의 진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아프간 파견 동의안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이 정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숨 돌리는 의미에서 방청석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소개로 대구 영신고등학교 학생 33인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의원신상발언

(15시24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유기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2월까지 심사를 여야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31

일 지방선거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그러나 어느 의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란이고, 또 선거구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비용도 증대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이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선거, 또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과 다르게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기초의원의 경우에만 중대선거구를 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차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몇 가지 있다고 그립니다.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경우에 의원 수가 증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증대한다 하더라도 크게 증대하지 않는 이유가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의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러한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시 획정을 하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은 여야가 전부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대신해서 합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내대표단의 합의만으로 이 정개특위의 안이 된다고 그러면 무엇 하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에 따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칙을 외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단 사이의 합의야말로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원안에 없는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무효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원안에 없던 내용이 통과된 바가 있었고, 이것은 바로 지금 수정안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그때 헌법재판소에 쟁의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느냐 하면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모처럼 여야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야당 의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를 비롯하여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철회 요구를 여야 원내대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야기로 우리 헌법기관인, 독립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선거법 개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야당 대표부의 말씀도 저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충분히 김상희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여성 공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유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영진·서갑원·조영택·송영길·양승조·박은수·이춘석·박기춘·최영희·박선숙·김성곤·최철국·우윤근·박병석·최규성·변재일·박영선·김동철·김영록·강운태·이낙연·

유선후 의원 발의)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33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대통령 퇴임 후 경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140건의 방대한 국회관계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국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 본회의 수정안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수정안의 범위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해묵은 논쟁을 거듭해 오던 것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뜻 깊은 개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참으로 좋은 토론을 해서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단서조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동의안이라 하더라도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둘째,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 시 관련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 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는 실무적으로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의안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 범위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답변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 답변하는 경우에도 허위 진술을 한 때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이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 보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좌직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한 것으로 현재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과 운영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우윤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은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글의 경우에는 발음하기도 좋아야 됩니다.

우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2인 가운데 찬성 169인, 반대 8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4인 가운데 찬성 181인, 기권 3인,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4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4인 가운데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 김세연 의원님 소개로—부산 금정구가 지역구입니다—그 지역구민 23명이 와 계십니다.

##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김옥이 · 김무성 · 유승민 · 이성현 · 한선교 · 손범규 · 임동규 · 배영식 · 김소남 · 임두성 · 강성천 · 원희목 · 김영우 · 이윤성 · 박대해 · 손숙미 · 유정복 · 이정현 · 이학재 · 허원제 · 진영 의원 발의)

(15시43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8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옥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金玉伊**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 · 판매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금액이 극히 소액이어서 그 의미가 퇴색하였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단서를 달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상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보전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해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 정신교육의 장인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쟁기념사업회에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검증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김옥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여기서 제안설명하신 분들은 이 근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복 및 군용장구…… 아,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1인 그래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67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 위원장 제출)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산업敎育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과학敎育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세연 의원 대표발의)  
(김 세연 · 김용태 · 권영진 · 박보환 · 박영아 · 서상기 · 신성범 · 이철우 · 정두언 · 조천혁 의원 발의)

(15시49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순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직업敎育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敎育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과학敎育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영희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정영희**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의 정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제안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법안으로서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법인 또는 영업주가 사업을 수행할 당시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법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양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정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가운데 찬성 168인,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거기 무슨 이상 있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2인, 그래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4인 가운데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재석 과반수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0인, 기권 3인, 그래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69인, 기권 4인, 그래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3인, 그래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가운데 찬성 168인, 그래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6시04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22항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금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금래**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금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종업원 등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 등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원안 의결하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김금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가운데 찬성 16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6인,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가운데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조진래 의원님, 좌석에 문제가 있나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조진래 의원 의석에서 — 예.)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8인 가운데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2인, 기권 1인,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7시15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3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4건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석·권경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에서는 동 법률이 시행규칙에서 어항관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법률

에서 규정토록 하고, 양벌규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강석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8인, 반대 1인, 그래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71인, 그래서 어장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4인, 그래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16시22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35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현기환**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 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들 3건의 법률안은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16시25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윤상현**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국 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하여 잔여 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양국 간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문화 간 상호 존중 및 국제사회의 문화 교류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서 국제법 차원의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동 협약이 WTO 등 다른 통상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 적용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김춘진·강명순·최재성·원유철·이정선·정미경·조전혁·진성호·박준선·

권성동 · 김충조 · 정의화 · 이경재 · 박기춘 · 전혜숙 · 홍사덕 · 김유정 · 박상천 · 최인기 · 김영록 · 주승용 · 허천 · 정장선 · 박선숙 · 김성순 · 백원우 · 안규백 · 서종표 · 김상희 · 김동철 · 이성남 · 조영택 · 강봉균 · 이시종 · 최규성 · 조정식 · 오제세 · 최철국 · 김재균 · 변재일 · 김영진 · 이미경 · 이강래 · 우윤근 · 우제창 · 백재현 · 박주선 · 박은수 · 김효석 · 김소남 · 김학용 · 이낙연 · 안민석 · 손숙미 · 이애주 · 유재중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결 · 신상진 · 최구식 · 윤석용 · 안효대 · 유기준 · 신학용 · 김금래 의원 발의)

##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종혁 · 조승수 · 이진복 · 정수성 · 홍정욱 · 김충환 · 김성순 · 신상진 · 김기현 · 김태원 · 이성현 · 유성엽 · 유기준 · 김부겸 · 김을동 · 김영진 의원 발의)

(16시30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1항 「UN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의 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2항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統一委員長代理 鄭玉任**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정옥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UN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의 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2000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동 협약과 의정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정부에 대해서 그 비준을 위한 입법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인신매매 등 초국경적 조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문법상 오류 등 결의안의 체계와 자구는 일부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종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한 지

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 영유아들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서 육체 및 지능이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영유아들의 영양부족 문제는 임산부의 영양부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임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이 결의안의 제명을 북한 지역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철저한 현실의 북한 지역의 심각한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부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지역의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부족 문제 해결에 관한 효과적인 대북 영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남북한 당국이 일체의 정치적 · 군사적 고려가 배제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영양부족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고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연수원 교육생, 초등학교 교사 청년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UN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이정현·임영호·박은수·유정복·박민식·김을동·최구식·구상찬·김옥이·이한성·이해봉·현경병·김태원·한선교·김성태·황우여·조원진·이범래·김성수·안형환·김선동·이경재·안효대·이계진·김세연·김장수·백재현·이종구·송훈석·김소남·허원제·김영우·박선숙·최영희·유기준·정수성·이주영·김부겸·권영세·권선택 의원 발의)

(16시36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3항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대리 이정현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의궤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기록한 문서로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동 결의안은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문화재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책임감 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의미 있는 반성의 표명과 함께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왕조 의궤의 환수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 신임 정권이 들어섰고 올해 경술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등 한일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중대한 시점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도 의미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환경노동·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6시39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4항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에 따라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

(16시42분)

○**부의장 문희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구 민주당 전병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던 747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던 747 공약은 날지도 못하고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를 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의 447 정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집권당은 집권 2년차에 친박파니 친이파니 하면서 조선시대 4색 당파 싸움을 무색케 하는 망국적인 2색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4대강 공사, 세종시 백지화, 부자감

세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토가 유린되고 서민들 가슴에 용어리만 커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방송 장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확실하게, 보다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속을 국민도 아닌데 착각에 빠져서 KBS, YTN 그리고 마침내는 신뢰받는 국민앵커 출신 엄기영 MBC 사장을 내몰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은 그 어느 방송보다 MBC를 두려워했습니다. MBC 노조가 강성이어서도 아니고 MBC 사장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MBC의 국민 신뢰도가 1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MBC를 통해 낱낱이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MBC를 죽이기 위해 대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표적 삼았습니다. 검찰이 동원되고 보수언론이 가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앞뒤가 안 맞는 무리한 제재로 가세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높고 사랑받는 신경민, 손석희 등 방송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마침내는 국민앵커 엄기영 사장도 쫓아낸 것입니다. 이 모두가 MB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야비하고 치졸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방문진을 교체하고 나서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외압으로부터 지켜왔던 방폐를 창으로 돌변시켜서 직접적인 섭정과 경영진 사표 요구 등 직할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민주화의 결실로 이루어진 노사 간의 합의도 휴지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김우룡 이사장과 그 배후 세력들은 MBC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사 이래 유례없는 100일에 가까운 경영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김우룡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김우룡 이사장은 엄기영 사장의 절대 권한인 보직 인선에 직접 개입하고 직접 당사자들과 통화하는 등 참으로 사장의 권한과 권위를 완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우룡 이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최시중 위원장의 MBC 정명론(正名論)은 MBC 죽이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매우 집요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준비된 MBC 죽이기가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KBS, YTN 그리고 MBC까지 준비된 방송장악 매뉴얼이 되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홍보 도구용 방송, 관제용 방송을 완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 위원회는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소리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었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훗날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MBC 사장 교체는 성공할지 몰라도 지난 수십년간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해 쌓아온 MBC 정신만은 결코 죽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MBC 장악은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정권에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송 민주화 역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시대를 맞아 방송자유 투쟁에 새로운 역사를 열여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전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容九 議員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입니다.

2008년 이후 SSM의 무차별 진출로 인하여 동네 영세상인들은 목숨과도 같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 대표, 슈퍼마켓 대표, 영세상공인 대표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3개월간 54만 개의 소상공 자영업 점포가 폐쇄되었으며, 대형마트의 진출로 재래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100여 개의

시장에서 1만 3475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제 SSM을 만들어 골목골목 구멍가게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프랜차이즈 형태로 변형하여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카멜레온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국회는 SSM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SSM 개설을 제한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1550개의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4328개를 포함하여 반경 1km 내에는 SSM을 개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1550개의 전통시장으로 한정하고 반경 500m 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는 SSM을 강하게 규제할 경우 WTO가 불공정거래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대기업 눈치 보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장대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SSM 진출 규제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호해 주고 이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도록 보듬어 주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끝내 무산시킨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 이겠습니까?

정부는 SSM의 무차별 진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SM은 2008년 477개에서 2009년 696개로 45.9%가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2월 2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2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경제정책 최대 수혜층은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는 응답이 73%나 된 데 반해 서민과 빈곤층의 수혜는 단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서민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대기업 유통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영세 서민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경제위기 이후 서민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의 무차별 진출로 영세한 동네 골목상권이 무너져 수많은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국회마저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간과해 버린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입니다.

제17대 국회와 같이 법안 심의를 질질 끌다가 임기 만료를 기다려 자동폐기시킬 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현재 계류 중인 SSM의 무차별적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가을에는 집단사퇴 사태를 연출하시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이 상임위를 제발 좀 열자고 하고 또 여당은 개회를 회피하는 회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호소와 이명박 정부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도 국회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교육법 개정과 관련된 회의를 제외하면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또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여당의 개회 요구에 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4당은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한나라당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거부로 교과위가 열리지 않

는 동안 교육계는 알몸 졸업식, 인사청탁 비리, 건설 관련 비리, 입학사정관 관련 대입 부정입학비리 등으로 썩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차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지방선거 관련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대책 의혹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 교과부의 선거대책 문건은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을 돋는 것이며 노골적으로 관권 개입 선거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성했다고 하는 이 문건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이고, 한나라당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며,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선거전략 기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작성해서 한나라당에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말 한마디로 당시 한나라당의 공격을 받아 탄핵까지 받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견주어 보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적어도 해당 장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자진 사퇴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러한 관권선거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상임위를 개최하여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고 깔끄러운 현안이라고 해서 회의 개의 자체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잘하는 행태가 아니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루속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동참하시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각종 교육계 비리와 현안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입니다.

국민적 저항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주도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전용도 아닌 내국인 진료를 100%, 전면 허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하는 것을 특정 지역에 병원 하나 세우는 간단한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여섯 군데나 있고 그 범위도 전국 방방곡곡 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의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전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지방에서 수도권 유명병원으로 원정진료를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전국의 환자들이 몰릴 것이 뻔합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합작으로 설립했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 병을 고치겠다고 외국 영리병원에 몰릴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의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싼 병원비를 내야 하고 이것은 의료비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리병원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훌륭한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합니까? 외국병원이어야만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의료수요를 감안하여 그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 외국병원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영리병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복지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비율을 50%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내국인 진료비율 50%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비율도 50%로 해야 한다는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비율 50%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경제부에서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할 것이라고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 유치는 단순히 병원 하나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한 일체의 의료 영리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48인)**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장수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기권 의원(10인)**

김낙성	김혜성
송훈석	유승민
정하균	조원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6인)****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길부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태	김성순	김성식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정권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학용	김재윤	김정정	김정권
김태원	김충조	김태환	김태환
김혜성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나경원	박기춘	노영민
김성곤	김효재	박기춘	박대해
김성조	류근찬	박보환	박상돈
김성태	박근혜	박보환	박순자
김영우	박병석	박병석	백원우
김용구	박상천	박선영	박준선
김재윤	박은수	박종근	백준선
김춘진	백은희	변웅전	서종표
김학송	백재현	송훈석	신성범
김학용	백재현	신학용	신재철
김혜성	손숙미	신지호	안규백
나성린	송훈석	신학용	안규백
노영민	신학용	신지호	안준호
박기춘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박보환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박병석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박종근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백준선	유정복	유승민	유재중
백원우	유상현	윤영	이강래
박준선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백원우	이명규	이명수	이두아
박준선	이병석	이성남	이범관
백원우	이영애	이용경	이애주
박준선	이정현	이종걸	이정선
백원우	이주영	이종구	이종혁
박준선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백원우	이한구	이한성	이한성
박준선	이희창	임동규	임동규
백원우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박준선	정동영	정두언	정혜숙
백원우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박준선	정태근	정하균	정진섭
백원우	조문환	조승수	조경태
박준선	조진혁	조해진	조진래
백원우	주광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3인)**

윤석용	이인기	정해결
-----	-----	-----

**기권 의원(2인)**

강명순	장제원
-----	-----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반대 의원(8인)**

박준선	유기준	윤석용	이인기
정의화	조승수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5인)**

김충조	원유철	이사철	정갑윤
조진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2인)****찬성 의원(169인)**

장기갑	장길부	장명순	장석호
장성천	장승규	장용석	장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희목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4인)****찬성 의원(181인)**

장기갑	장길부	장명순	장석호
장성천	장승규	장용석	장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경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종표
백재현	서병수	송영선	신상진
손숙미	송훈석	신지호	심재철
신성범	신학용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희목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김정권 변웅전 안홍준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8인)****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허원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3인)**

장성천 박준선 조진형

**기권 의원(4인)**

김영환 박은수 정갑윤 최규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84인)****찬성 의원(179인)**

강기갑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김정경	김정훈	김춘진	김태원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효석	김효재	노영민	류근찬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송영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이영애	이용희	이정선	이정현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이종결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이종결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최영희	최인기	허원제	현경병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b>기권 의원(5인)</b>							
강명순	김정권	윤석용	이용경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이춘석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반대 의원(2인)  
이용경 조승수  
기권 의원(2인)  
정해결 최영희

황영철

정옥임 정의화  
정태근 정하균  
조문환 조승수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영  
최문순 최병국  
최인기 최철국  
현경병 현기환  
홍재형 홍준표  
정장선 정해결  
조원진 주광덕  
주성영 최구식  
최연희 최규식  
허원제 허태열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정진섭 조경태  
조진래 최규식  
최영희 허태열  
허원제 홍일표  
황우여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장길부	강명순	장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 ○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7인)

강명순	장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여옥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정해결	조경태	조원진	조진래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혜숙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b>반대 의원(5인)</b>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조문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승수				조경태	조문화	조승수	조원진
<b>기권 의원(5인)</b>							
강길부	박선숙	신성범	유성엽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이용경				주성영	진성호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8인)

####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옹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4인)

#### 찬성 의원(16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우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옹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임동규	장윤석	전여옥	전혜숙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전병현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진성호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최연희	최영희	최철국	허원제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황영철	황우여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b>기권 의원(2인)</b>							
김영환	전병현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 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정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8인)**

장길부	장명순	강석호	강성천
장승규	장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준선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범래	이병석	이상민	이성남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허원재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최구식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b>기권 의원(2인)</b>							
김성곤	김효재						

##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찬성 의원(16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장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2인)**

이사철 최영희

## ○職業教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찬성 의원(16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장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겹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재	나 성 린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노 영 민	류 근 찬	박 근 혜	박 기 춘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김 재 윤	김 정 정	김 정 권	김 정 훈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재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박 근 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상 현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윤 석 용	윤 영	이 계 진	이 군 현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인 기	이 정 선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계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군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민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장 윤 석	전 여 옥	전 혜 속	정 갑 윤	이 용 희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조 경 태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혜 속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문 순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최 철 국	허 원 재	허 태 열	현 기 환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황 우 여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기권 의원(3인)**

김 영 환    유 성 협    전 병 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73인)****찬성 의원(17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겹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재 윤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혜 성	김 혜 재
김 학 송	김 충 조	김 혜 성	김 혜 재
나 성 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박 근 혜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박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박 선 숙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박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기 춘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선 영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종 근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백 재 현	김 혜 성	김 혜 성	김 혜 재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유 성 협	이 낙 연	이 사 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73인)****찬성 의원(17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유 성 협	이 낙 연	이 사 철	

## ○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유성엽 전병현 최영희

(권영진 의원 표결기 조작 촉오. 실제 찬성 의원 170인, 기권 의원 3인임)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전병현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주성영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b>기권 의원(3인)</b>							
유성엽	정장선	최영희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8인)

####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장윤석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71인)

#### 찬성 의원(16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장윤석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혜숙	이정선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주성영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황우여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b>기권 의원(2인)</b>							
유성엽	이종혁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법률안

##### 투표 의원(172인)

##### 찬성 의원(16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우윤근	원유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정선	이정현	이진복	이진삼
이용경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용희	이정현	이진복	이진삼	
이인기				
<b>기권 의원(2인)</b>				
박선영	백원우	양승조	최영희	
<b>반대 의원(4인)</b>				
박선숙	유성엽			
<b>기권 의원(2인)</b>				

### ○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0인)

#### 찬성 의원(16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류근찬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우윤근	원유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석용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형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조전혁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류근찬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세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류근찬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전병현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1인)

순명용선석택래성식우수권원석석영선우표석용  
강강권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길승정택동성소유충혜근선종은병영지  
부규숙기성수남정정조성혜숙근희수선호  
강파권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강파박박박박배서송식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3인)	장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권영진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김낙성	김선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선조	김성조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영환	김영환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재윤	김재윤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준진	김준진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정운	김정운
김정	김정권	김재훈	김춘학	김춘학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성린	김성린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박상돈	박상돈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은수	박은수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영배	박영배
박종근	박준선	박진	변웅	변웅
박은희	백원우	백재현	송숙미	송숙미
서병수	서종표	송병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신건	신낙균	신성범	신지호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이회창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규식	장윤석	전병현	정갑윤	정동영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b>기권 의원(2인)</b>							
김용구	이혜훈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조진래 의원 착오로 정희수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찬성 의원 163인, 기권 의원 2인임)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6인)

### 찬성 의원(16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박근혜	박병석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투표 의원(168인)

### 찬성 의원(16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효 재	나 성 린	박 근 혜	박 병 석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백 재 현	변 응 전	서 병 수	서 종 표	박 근 혜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지 호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응 전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계 진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은 채	이 인 기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이 은 채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임 동 규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혜 숙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정 태 근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전 병 헌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철 국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b>기권 의원(1인)</b>							
김 정 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2인)

신 성 범 이 화 수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용구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167인)****찬성 의원(16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고홍길	곽정숙	권선택	권영길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박근혜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원유철
윤영	이강래	이계진	유승민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유정현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유일호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유상현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용경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이영애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인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종혁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이찬열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한구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회창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임동규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정혜숙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정갑윤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정영희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정진섭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조경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조문환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조진래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 성 조 이 명 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69인)****찬성 의원(16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겹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현 기 환

홍 준 표

**최 철 국**

홍 영 표

황 영 철

**추 미 애**

홍 일 표

황 우 여

**허 원 제**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춘 석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71인)****찬성 의원(17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겹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최규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 춘석	이 학재	이 한구	이 한성	이 인기	이 정선	이 종구	이 종혁
이 혜훈	이 화수	이 회창	임동규	이 주영	이 진복	이 진삼	이 찬열
장광근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이 철우	이 춘석	이 학재	이 한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이 한성	이 혜훈	이 화수	이 회창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혜숙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최규성	최인기	최병국	최연희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최영희	허태열	현기환	추미애
황우여				허원제	홍일표	홍재형	홍영표
				황우여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주광덕	진성호	최병국	최연희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최영희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최인기	허태열	홍재형	황영철
허원제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 계 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유 기 준	유 성 양	유 승 민	유 일 호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정 현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계 진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광 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혜 숙	정 갑 윤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선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장 광 근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혜 숙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최 철 국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기권 의원(1인)**

정 옥 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투표 의원(171인)****찬성 의원(17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편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총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남 경 필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투표 의원(173인)****찬성 의원(17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편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총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남 경 필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신 성 범	신 건	신 낙 균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형 환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남경필
송훈석	신건	신상진	신성범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오제세	우윤근	원유칠	원혜영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안경률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전병현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정하균	조경태	조승수	조원진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혜훈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진성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장윤석	전병현	전혜숙	정갑윤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정동영	정두언	정수성	정영희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승수
황우여	황진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b>기권 의원(3인)</b>							
김영환	신낙균		안민석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1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8인)

김태환 이한성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정 김 정 훈 김 태 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철 국 추 미 애 허 원 제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전병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68인, 기권 의원 없음)

장 승 규 김 용 석 강 창 일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정 정 김 정 훈  
 김 재 윤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춘 진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학 송 김 효 재 나 성 린 남 경 필  
 김 효 재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준 선 박 준 선 박 진 배  
 백 원 우 백 원 우 백 재 현 영 식 변  
 백 재 현 서 병 수 종 표 송 훈 석  
 손 범 규 손 숙 미 신 지 호 신 학 용  
 송 훈 석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상 진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유 기 준  
 안 효 대 원 희 목 유 재 중 유 정 복  
 원 유 철 원 유 철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유 정 현 유행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윤 영 유행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윤 영 유행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윤 영 유행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희  
 이 범 래 이 범 래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애 주 이 애 주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인 기 이 인 기 이 종 혁 이 찬 열  
 이 종 혁 이 종 혁 이 주 영 이 학 재  
 이 철 우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장 광 근 장 광 근 장 윤 석 임 동 규  
 정 갑 윤 정 갑 윤 정 두 언 전 병 현  
 정 영 희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수 성  
 정 태 근 정 태 근 정 하 균 정 진 섭  
 조 승 수 조 승 수 조 원 진 조 경 태  
 조 진 형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전 혁  
 최 규 성 최 규 성 최 규 식 진 성 호  
 최 인 기 최 철 국 추 미 애 최 병 국 최 연 희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최 인 기 홍 기 환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우 여 황 진 하

## 반대 의원(3인)

곽 정 숙 권 영 길

이 진 삼

## 기권 의원(2인)

김 낙 성 김 성 식

##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 투표 의원(167인)

## 찬성 의원(16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전병현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진성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 ○출석 의원(25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환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화진	문화상	박근혜
박기준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정복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세환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장윤석	장제원	전병현	전여옥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임영호	장윤석	전여옥	전현희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영희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구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 ○개의 시 재석 의원(187인)

강기정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태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규백	안홍준

여상규	오제세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윤석용	윤영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성남
이영애	이용경
이온재	이재선
이종구	이종혁
이찬열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임동규	임현희
전여옥	전현희
장윤석	장현희
조경태	조진혁
조순형	조정식
조정식	조승수
조재윤	조희수
조희수	조희수
한경병	한경병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홍준표

## ○산회 시 재석 의원(28인)

곽정숙	김금래	김낙성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용구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문희상	서종표	송영선	신건
신낙균	안민석	양승조	윤석용
이영애	이찬열	전현희	정동영
정영희	정하균	조배숙	최연희

## ○출장 의원(5인)

성윤환	이경재	조영택	천정배
한선교			

## ○청가 의원(9인)

김영록	김우남	송광호	유원일
임해규	정범구	정진석	주승용
최재성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안이	계동
입법차장		
의사국장		

## ○출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천	영	우
국방부 차관	장	수	만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	황우여	한나라당	2010. 2. 22

###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 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	황우여 이명규 정의화 이종구 나경원 장윤석 권성동 이정현 이한성 조전혁	한나라당	2010. 2. 18
	김영진 박병석 이시종 전혜숙 홍영표	민주당	
	임영호 윤상일 이용경	어느 교섭단체 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	이명규	한나라당	2010. 2. 22
	신학용	민주당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	홍영표	신학용	민주당	2010. 2. 22

### ○의안 제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8 김재윤 · 강창일 · 김동철 · 김영진 · 김우남 · 김재균 · 박선숙 · 박은수 · 양승조 ·

우제창 · 원혜영 · 유원일 · 이찬열 · 이한성 · 조영택 의원 발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이재선 · 이상민 · 심대평 · 이명수 · 김용구 · 임영호 · 김창수 · 이성현 · 박선영 · 박상돈 의원 발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2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박상돈 · 김창수 · 이상민 · 임영호 · 김용구 · 진영 · 이명수 · 오제세 · 박선숙 · 류근찬 · 이해봉 의원 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김성식 · 진수희 · 나성린 · 박종근 · 유일호 · 이종구 · 김태원 · 안효대 · 황영철 · 정태근 · 윤석용 · 현기환 · 김선동 · 주광덕 · 권영진 · 김성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송 · 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조해진 · 김영우 · 이한성 · 김성태 · 권택기 · 김금래 · 강성천 · 정양석 · 이은재 · 강승규 의원 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조해진 · 김영우 · 이한성 · 김성태 · 권택기 · 김금래 · 강성천 · 정양석 · 이은재 · 강승규 의원 발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조해진 · 김영우 · 이한성 · 김성태 · 권택기 · 김금래 · 강성천 · 정양석 · 이은재 · 강승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0. 2. 17 이재선 · 이상민 · 강창일 · 심대평 · 이명수 · 김용구 · 임영호 · 김창수 · 이성현 · 박선영 · 박상돈 의원 발의)

2월 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8 김춘진 · 장세환 · 양승조 · 안민석 ·  
김성순 · 이용경 · 이석현 · 백원우 · 박은수 ·  
문학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8 조승수 · 김정권 · 정동영 · 강기갑 ·  
박은수 · 김부겸 · 이찬열 · 신상진 · 한선교 ·  
유원일 · 이인기 의원 발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정범구 · 유성엽 · 최규성 · 전현희 ·  
백영선 · 강기갑 · 양승조 · 장세환 · 송영길 ·  
이시종 · 김유정 · 김우남 · 조배숙 · 박주선 ·  
이찬열 · 이낙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조진형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결 ·  
정갑윤 · 이범래 · 신지호 · 이윤석 · 김소남 ·  
원유철 · 김영진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8 조진형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결 ·  
정갑윤 · 이범래 · 신지호 · 이윤석 · 김소남 ·  
원유철 · 김영진 의원 발의)

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조진형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결 ·  
정갑윤 · 이범래 · 신지호 · 이윤석 · 김소남 ·  
원유철 · 김영진 의원 발의)

2월 1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18 정부 제출)

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  
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 2010. 2. 19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9 김재윤 · 강기갑 · 김동철 · 김영진 ·  
김우남 · 김재균 · 신상진 · 원혜영 · 오제세 ·

우제창 · 유성엽 · 유원일 · 이찬열 · 이한성 ·  
조영택 의원 발의)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윤석용 · 이명수 · 이한성 · 황영철 ·  
이해봉 · 황우여 · 김영진 · 임두성 · 김성태 ·  
박준선 의원 발의)

2월 2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신상진 · 최구식 · 안효대 · 윤석용 ·  
백성운 · 김을동 · 유기준 · 진성호 · 이한성 ·  
이성현 · 김성태 · 손숙미 · 김성수 · 김기현 ·  
이사철 · 이인기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신상진 · 최구식 · 안효대 · 윤석용 ·  
백성운 · 김을동 · 유기준 · 진성호 · 이한성 ·  
이성현 · 김성태 · 손숙미 · 김성수 · 김기현 ·  
이사철 · 이인기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9 신상진 · 최구식 · 안효대 · 윤석용 ·  
백성운 · 김을동 · 유기준 · 진성호 · 이한성 ·  
이성현 · 김성태 · 손숙미 · 김성수 · 김기현 ·  
이사철 · 이인기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신상진 · 최구식 · 안효대 · 윤석용 ·  
백성운 · 이한성 · 이성현 · 김성태 · 손숙미 ·  
김성수 · 이사철 · 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9 이계진 · 이한성 · 이시종 · 최구식 ·  
김세연 · 김영록 · 이윤석 · 박대해 · 최연희 ·  
이철우 의원 발의)

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조배숙 · 김영환 · 최규성 · 이찬열 ·  
전혜숙 · 김우남 · 장세환 · 박병석 · 김춘진 ·  
이성남 · 양승조 의원 발의)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박영아 · 서상기 · 김세연 · 정두언 ·

조전혁 · 이성현 · 김효재 · 김정훈 · 손숙미 ·  
이경재 · 조문환 · 배은희 의원 발의)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 **국회의원(박진) 징계안**

(2010. 2. 19 김충조 · 박상천 · 박주선 · 송민순 ·  
신낙균 · 이미경 · 정동영 의원 외 81인 발의)

2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2. 22 이명수 · 김용구 · 정의화 · 박상돈 ·  
김창수 · 임영호 · 손범규 · 김우남 · 고승덕 ·  
송영길 · 김을동 의원 발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0. 2. 22 박준선 · 강성천 · 구상찬 · 김금래 ·  
김성수 · 김옥이 · 김학용 · 박보환 · 손범규 ·  
신상진 · 신지호 · 심재철 · 원유철 · 원희룡 ·  
원희목 · 윤석용 · 이경재 · 이범래 · 이애주 ·  
이정선 · 이춘식 · 이학재 · 이화수 · 임해규 ·  
정양석 · 정태근 · 조진형 · 진수희 · 진영 ·  
차명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0. 2. 22 황영철 · 강용석 · 박준선 · 이한성 ·  
권영진 · 이해봉 · 윤석용 · 김기현 · 유성엽 ·  
김성태 의원 발의)

2월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10. 2. 22 정부 제출)

이상 3건 2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2 이시종 · 홍재형 · 오제세 · 노영민 ·  
최규성 · 주승용 · 김영록 · 백재현 · 이계진 ·  
유성엽 의원 발의)

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발의)

(2010. 2. 22 조경태 · 송영선 · 김우남 · 백재현 ·  
김동철 · 이석현 · 신건 · 유원일 · 홍영표 ·  
홍재형 · 박선숙 의원 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2 조경태 · 송영선 · 김우남 · 백재현 ·  
김동철 · 이석현 · 신건 · 유원일 · 홍영표 ·  
고승덕 · 홍재형 · 박선숙 의원 발의)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2. 22 조경태 · 송영선 · 김우남 · 백재현 ·  
김동철 · 이석현 · 신건 · 유원일 · 홍영표 ·  
고승덕 · 홍재형 · 박선숙 의원 발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2 조경태 · 송영선 · 김우남 · 백재현 ·  
김동철 · 이석현 · 신건 · 유원일 · 홍영표 ·  
홍재형 · 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 률안**

(2010. 2. 25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양승조 · 김유정 · 박은수 · 오제세 ·  
최문순 · 유원일 · 강기정 · 박영선 · 송영길 ·  
김재균 · 최규식 · 곽정숙 · 박병석 · 전혜숙 의원  
발의)

2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허원제 · 유재중 · 김효재 · 이경재 ·  
이한성 · 원희목 · 진성호 · 성윤환 · 정병국 ·  
박영아 · 이군현 · 이성현 · 김세연 의원 발의)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김상희 · 홍희덕 · 김재윤 · 강기갑 ·  
백선숙 · 안규백 · 오제세 · 이미경 · 이찬열 ·  
권영길 · 이정희 · 최영희 의원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3 김상희 · 안규백 · 박은수 · 김동철 ·  
강기갑 · 최재성 · 김영진 · 이미경 · 이찬열 ·  
김재윤 · 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권영길 · 안민석 · 강기갑 · 곽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조승수 · 유원일 · 김재윤 · 최문순 · 김영진 · 유성엽 의원 발의)  
 2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권영길 · 안민석 · 강기갑 · 곽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조승수 · 유원일 · 김재윤 · 최문순 · 김영진 · 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권영길 · 안민석 · 강기갑 · 곽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조승수 · 유원일 · 김재윤 · 최문순 · 김영진 ·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이애주 · 강명순 · 김효재 · 박민식 · 안형환 · 신상진 · 이성현 · 이인기 · 이정선 · 이한성 · 한선교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전혜숙 · 최철국 · 박은수 · 백원우 · 최영희 · 이미경 · 조정식 · 김영록 · 안규백 · 박주선 · 최문순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전혜숙 · 최철국 · 박은수 · 백원우 · 최영희 · 이미경 · 조정식 · 김영록 · 안규백 · 박주선 · 최문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전혜숙 · 최철국 · 박은수 · 백원우 · 최영희 · 이미경 · 조정식 · 김영록 · 안규백 · 박주선 · 최문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전혜숙 · 최철국 · 박은수 · 백원우 · 최영희 · 이미경 · 조정식 · 김영록 · 안규백 · 박주선 · 최문순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이정선 · 이인기 · 정미경 · 정영희 · 이해봉 · 신학용 · 이한성 · 박준선 · 김금래 · 권영세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24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이정희 · 강기갑 · 강창일 · 고승덕 · 곽정숙 · 권영길 · 양승조 · 유원일 · 정동영 · 최문순 · 최재성 · 홍희덕 의원 발의)  
 2월 24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김용태 · 고승덕 · 정두언 · 현경병 · 권택기 · 공성진 · 이사철 · 조문환 · 김영선 · 허태열 · 신학용 의원 발의)  
 2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2.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 2.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최재성 · 백원우 · 김영진 · 강기정 · 이찬열 · 서종표 · 이종걸 · 이정희 · 홍재형 · 안민석 · 김춘진 · 박선숙 · 김진표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허동현) 선출안**  
 (2010. 2. 24 의장 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권선택 · 임영호 · 강창일 · 유성엽 · 이상민 · 김창수 · 박상돈 · 이인제 · 이재선 · 김낙성 · 최영희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권선택 · 임영호 · 박순자 · 유성엽 · 이상민 · 이명수 · 김창수 · 이진삼 · 박상돈 · 이재선 · 김낙성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  
 (2010. 2. 24 홍희덕 ·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송훈석 · 이광재 · 이정희 · 유원일 · 조승수 ·

최문순 · 허천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김정 · 김학송 · 권영세 · 유승민 · 진영 · 김성식 · 김옥이 · 심대평 · 노철래 · 김성곤 · 최연희 · 윤상일 · 김혜성 · 유성엽 · 권성동 · 이한성 · 서상기 · 정하균 · 이성현 의원 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김정 · 김학송 · 권영세 · 진영 · 유승민 · 김성식 · 김옥이 · 심대평 · 노철래 · 김성곤 · 최연희 · 윤상일 · 김혜성 · 유성엽 · 권성동 · 이한성 · 서상기 · 이윤성 · 정영희 · 정하균 · 이성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고승덕 · 송영선 · 유원일 · 현경병 · 송민순 · 정의화 · 이한성 · 정동영 · 이해봉 · 이명수 · 조경태 · 황우여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조승수 · 김우남 · 박은수 · 고승덕 · 강기갑 · 권영길 · 홍희덕 · 유원일 · 곽정숙 · 정동영 의원 발의)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信託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2. 24 정부 제출)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0. 2.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2010. 2. 2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31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23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28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의안 심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0. 29 박지원 · 김영진 · 서갑원 · 조영택 · 송영길 · 양승조 · 박은수 · 이춘석 · 박기춘 · 최영희 · 박선숙 · 김성곤 · 최철국 · 우윤근 · 박병석 · 최규성 · 변재일 · 박영선 · 김동철 · 김영록 · 장운태 · 이낙연 · 유선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조약 비준동의안**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09. 11. 4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09. 11. 13 김춘진 · 강명순 · 최재성 · 원유철 · 이정선 · 정미경 · 조전혁 · 진성호 · 박준선 · 권성동 · 김충조 · 정의화 · 이경재 · 박기춘 · 전혜숙 · 홍사덕 · 김유정 · 박상천 · 최인기 · 김영록 · 주승용 · 허천 · 정장선 · 박선숙 · 김성순 · 백원우 · 안규백 · 서종표 · 김상희 · 김동철 · 이성남 · 조영택 · 강봉균 · 이시종 · 최규성 · 조정식 · 오제세 · 최철국 · 김재균 · 변재일 · 김영진 · 이미경 · 이강래 · 우윤근 · 우제창 · 백재현 · 박주선 · 박은수 · 김효석 · 김소남 · 김학용 · 이낙연 · 안민석 · 손숙미 · 이애주 · 유재중 · 이사철 · 김태원 · 정해걸 · 신상진 · 최구식 · 윤석용 · 안효대 · 유기준 · 신학용 · 김금래 의원 발의)

###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09. 12. 4 이종혁 · 조승수 · 이진복 · 정수성 · 홍정욱 · 김충환 · 김성순 · 신상진 · 김기현 · 김태원 · 이성현 · 유성엽 · 유기준 · 김부겸 · 김을동 · 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8. 7. 17 이혜훈 · 김일윤 · 김무성 · 김태환 · 이종구 · 구상찬 · 김성희 · 고승덕 · 정진석 · 이성현 · 신지호 · 안형환 · 유일호 · 우제창 · 정장선 · 강용석 · 박준선 · 윤석용 · 김성식 · 김성태 · 황진하 · 서종표 · 김기현 · 손범규 · 권영진 · 김옥이 · 공성진 · 강명순 · 유정현 · 윤상현 · 김성조 · 김성수 · 현기환 의원 발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009. 12. 11 정부 제출)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옥이 의원 대표발의)**

(2009. 5. 19 김옥이 · 김무성 · 유승민 · 이성현 · 한선교 · 손범규 · 임동규 · 배영식 · 김소남 · 임두성 · 강성천 · 원희목 · 김영우 · 이윤성 · 박대해 · 손숙미 · 유정복 · 이정현 · 이학재 · 허원제 · 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職業教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수집 ·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08. 11. 12 정부 제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09. 1. 13 김세연 · 김용태 · 권영진 · 박보환 · 박영아 · 서상기 · 신성범 · 이철우 · 정두언 · 조전혁 의원 발의)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제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보고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2009. 12. 4 이정현 · 임영호 · 박은수 · 유정복 · 박민식 · 김을동 · 최구식 · 구상찬 · 김옥이 · 이한성 · 이해봉 · 현경병 · 김태원 · 한선교 · 김성태 · 황우여 · 조원진 · 이범래 · 김성수 · 안형환 · 김선동 · 이경재 · 안효대 · 이계진 · 김세연 · 김장수 · 백재현 · 이종구 · 송훈석 · 김소남 · 혀원제 · 김영우 · 박선숙 · 최영희 · 유기준 · 정수성 · 이주영 · 김부겸 · 권영세 · 권선택 의원 발의)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 **이상 10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6 권경석 · 조진형 · 김성조 ·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 **이상 5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8. 11. 21 정부 제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현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시흥 능곡 국민임대단지 부실시공에 관한 청원**  
(2010. 2. 24 경기 시흥시 능곡동 787 휴먼시아  
902동 902호 안기영 외 839인으로부터 백원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 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답변서 제출**

**낙후지역 교육지원정책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  
변서**

**교민 안전대책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0. 2. 18 정부 제출)

**경기북부지역 교통대책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  
변서**

**수산물 자숙 · 건조장 운영업에 있어 농사용 전  
력적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영산강III-1지구 마산3공구 농지개발 유보 친환  
경지역 보전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교육 · 사회 · 문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교통수당지급 관련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노인의치틀니 보험급여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  
한 답변서**

**아동수당지급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에 관한 질문서에 대  
한 답변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호국원의 시 · 도별 설치 필요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원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  
변서**

(이상 12건 2010. 2. 19 정부 제출)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2. 22 금융위원장 제출)

**경기북부 낙후지역 발전대책 국정방향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수산물 자숙 · 건조장 운영업에 있어 농사용 전  
력적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동두천시 대기업 공장 유치 대책에 관한 질문서  
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010. 2. 23 정부 제출)

(이상 18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통지**

**정당 명칭 변경에 대한 통지**

2010. 2. 2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정  
당의 명칭이 ‘친박연대’가 ‘미래희망연대’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